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검 토 보 고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
■ 이재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08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희 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4
1. 총칙규정	4
2. 디스플레이산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등	9
3.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위원회 및 전문연구기관 등	13
4.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지원	17
5. 디스플레이특구	19
6.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특례	25
7. 디스플레이산업 전문인력 양성	33
8. 보칙 및 벌칙	3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재관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5. 12. 22.
3. 회 부 일 : 2025. 12. 23.

II. 제안이유

디스플레이산업은 OLED, Micro LED, LCD 등 다양한 기술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반도체 및 이차전지와 함께 국가·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임. 특히, 디스플레이 산업은 IT, 모빌리티, 항공, 방산 등 국가경제의 핵심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생산설비·연구개발·전후방 산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음.

디스플레이산업은 중국과 양강 경쟁구도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상황에 놓여 있는데, 중국은 대규모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집중 투자하여 '21년 세계시장 1위 탈환 후 유지 중임. 디스플레이기술 초격차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디스플레이산업의 기술주권 확보와 공급망 안정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으나, 우리나라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디스플레이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기

술개발, 인력양성 등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디스플레이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디스플레이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경쟁력 강화 및 체계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5년마다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디스플레이산업혁신위원회를 둠(안 제8조).

라. 산업통상부장관은 디스플레이특구 지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디스플레이산업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디스플레이특구 계획을 승인하고 디스플레이특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2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스플레이특구 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

바. 디스플레이특구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관련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15조).

사. 조세에 관한 특례,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규제개선 등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특례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아. 디스플레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 지원, 디스플레이산업 특성화대학 지정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IV. 검토의견

1. 총칙규정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디스플레이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스플레이기술”이란 디스플레이(전기·전자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구현해 주는 장치로서 영상표시장치와 입력장치 등 관련 장치를 포함한다) 제품 및 그 소재, 부품, 장비, 설계, 응용 등과 연관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디스플레이산업”이란 디스플레이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디스플레이사업자”란 디스플레이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디스플레이특구”란 디스플레이산업의 집적과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디스플레이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는 디스플레이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디스플레이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정안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서 동 제정안의 입법취지가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있음을 선언하는 한편,

제정안 제2조는 정의규정으로서 “디스플레이기술”을 디스플레이 제품 외에 그 소재, 부품, 장비, 설계, 응용 등과 연관된 기술을 포괄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스플레이산업”과 “디스플레이사업자” 등 제정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

2024년 디스플레이산업의 국내생산액은 76.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3%를 점유하며 대외수출액은 211억 달러로 국가수출액의 3.1%를 점유하는 등¹⁾ 디스플레이산업은 국내 제조업과 대외 수출의 근간을 구성하고 있음.

한편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글로벌시장에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제품의 점유율이 42.6%에서 33.4%로 하락한 반면 중국 디스플레이제품의 점유율이 25.0%에서 47.9%로 상승하는 등²⁾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글로벌 시장경쟁이 격화되고 있음.

1) Invest Korea, 「디스플레이산업 분석」, KOTRA.

2) EG-TIPS, 「업종별 기술정보」, 한국에너지공단.

제정안은 이와 같은 글로벌 시장경쟁의 격화와 디스플레이산업이 국가 경제와 국내고용에 미치는 중요성³⁾을 고려하여 국내 디스플레이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우리나라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나,

기획예산처는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⁴⁾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기지정된⁵⁾ 산업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의규정과 관련하여 디스플레이산업이 소재 - 부품 - 장비 - 설계 - 응용 등 공급망과 기반기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산업⁶⁾으로서 전후방산업간 연계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디스플레이기술을 “디스플레이 제품 및 그 소재, 부품, 장비, 설계, 응용 등과 연관된 기술”로 폭넓게 정의하고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산업과

3) 전주용, 「기스플레이 제조기업의 일자리전환 실태분석」, 『지역산업과 고용』, 2025.4.

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4-025.

6)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중견·중소기업 1,290여개 사 / 소재·부품·장비 산업 국산화율 65%

디스플레이사업자 등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제정안 제3조는 국가가 디스플레이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시책과 재원을 마련하게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는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정책을 수립·시행하게 하고 있음.

산업통상부는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책무를 부과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유사조항⁷⁾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제정안 제4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서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과 관련하여 동 제정안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디스플레이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하게 하고 있음.

동 제정안이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디스플레이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발전기반 마련을 제정취지로 하고 있

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이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전략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전략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반 조성 및 전략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음을 고려할 때 디스플레이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률을 적용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2. 디스플레이산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등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 정 안
제5조(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디스플레이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경쟁력 강화 및 체계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5년마다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디스플레이산업의 동향 및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3. 디스플레이산업의 세계 교역 및 국내 수급 동향, 공급망 분석 4.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및 생태계 강화를 위한 법·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 디스플레이기술의 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6. 디스플레이산업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확대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디스플레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8조에 따른 디스플레이산업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8조에 따른 디스플레이산업혁신위원회에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디스플레이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대상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5조와 제6조는 정부가 5년마다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함.

디스플레이산업이 국가경제에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산업통상부는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부가 5년 주기로 디스플레이산업의 육성·보호에 관한 기본방향을 포괄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8),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⁹⁾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제정안 제7조는 정부가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게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있어 정확한 사실자료 확정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산업관련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을 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산업통상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부가 디스플레이산업을 포함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 매년 경제적·산업적·국제적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¹⁰⁾,

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전략산업등 육성·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보호를 위하여 5년 단위로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2. 전략산업등의 동향 및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3.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를 위한 혁신 기반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전략산업의 기술력 향상, 특화단지 지정계획, 전문인력 양성·보호 등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전략산업등 육성·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전략산업등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① 정부는 매년 전략산업등에 관한 경제적·산업적·국제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음¹¹⁾을 고려하여
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1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육성기반 조성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전략산업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3. 디스플레이산업혁신위원회 및 전문연구기관 등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 정 안
제8조(디스플레이산업혁신위원회) ①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디스플레이산업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중장기 전망 분석 및 국가 비전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디스플레이특구의 지정·변경·해제 및 디스플레이특구 계획의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에 관한 사항 5. 제17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에 관한 사항 6. 제18조에 따른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7. 디스플레이산업 기반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디스플레이기술 관련 품목의 공급 대책에 관한 사항 9. 디스플레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디스플레이산업 분야의 경쟁력 혁신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 관련 특례에 관한 사항 12. 디스플레이산업 분야 발전 시책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조정 및 조율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

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또는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디스플레이산업 전문연구기관) ① 정부는 디스플레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연구개발, 디스플레이사업자 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디스플레이산업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디스플레이산업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기획
2.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시장 창출·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등의 추진
4.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원료·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지원
5.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국제협력, 해외진출 지원 및 기술표준 대응
6.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
7.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연구개발 등 지원
8.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
9. 그 밖에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8조는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산업 관련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의 디스플레이산업혁신위원회를 설치함.

이는 디스플레이산업이 공급망과 기반기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산업으로서 에너지·상하수도·도로·환경과 노동 등 여러 부처 소관사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점을 고려한 것임.

다만 산업통상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등을 심의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상¹²⁾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1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으로 제정안 제9조는 정부가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제정안 제10조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디스플레이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것임.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의 경우 디스플레이산업 기반기술과 차세대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R&D 사업과 정책연구가 계속되고 있음¹³⁾을 고려할 때 정부가 전문연구기관을 설치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부는 전문연구기관과 전담기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편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¹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¹⁵⁾ 등 현행법에 따른 전문연구기관과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등 기존 유관기관을 적극활용하여 기관신설에 따른 기능중복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13) KIET, 「Display Industry Promotion Policies in China」, 2021.2.

1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등) ①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4.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지원 (안 제11조)

제 정 안
제11조(디스플레이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① 정부는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디스플레이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지원 2.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지원 3.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의 대응 지원 4. 해외특허출원 등 해외진출 전략에 관한 지도 및 자문 5.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지원 6. 이공계 석사 및 박사 연구인력 고용에 대한 지원 7.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 8. 그 밖에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첨단 디스플레이기술 확보 및 산업 고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스플레이사업자에 대하여 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을 할 수 있다. 1. 첨단 디스플레이 관련 시제품 생산 및 상용화를 위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 2. 첨단 디스플레이 제품 생산을 위하여 클린룸(clean room) 등의 제조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3. 국내에서 개발되지 않은 디스플레이기술의 국산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및 관련 시설·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첨단 디스플레이기술 확보 및 산업 고도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디스플레이산업 분야 수요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정부의 공공조달 또는 방위산업 분야에 필요한 국산 디스플레이기술 및 관련 제품의 고도화 및 교체에 대한 보조 2. 공공시설 내 디스플레이 교체 또는 신규 설치 시 국산 디스플레이 제품의 우선 구매에 관한 시범사업 지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다른 지원사업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11조는 정부가 디스플레이사업자에 대하여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구축을 지원하는 등 연구개발과 공급망 안정화, 기술보호를 포함하여 산업 전주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가 첨단 디스플레이 관련 시제품 생산이나 상용화를 위해 투자를 하는 디스플레이사업자 등에 대하여 세제상 지원과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게 함.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에서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대규모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는 등¹⁶⁾ 전세계적으로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응적 관점에서 디스플레이사업자에 대해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재정경제부는 개별법에서 세제상 지원에 대해 규정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¹⁷⁾ 규정과의 관계상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16) ITIF, 「How Innovative is China in the Display Industry?」, 2024.9.

17)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생략)

5. 디스플레이특구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 정 안

제12조(디스플레이특구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디스플레이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디스플레이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5. 디스플레이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려는 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6. 그 밖에 디스플레이특구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디스플레이특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디스플레이특구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디스플레이특구의 명칭, 위치 및 범위
2. 디스플레이특구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3. 디스플레이특구 개발 및 발전 계획
4. 디스플레이특구 개발 및 발전에 소요되는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5. 그 밖에 디스플레이특구 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디스플레이특구 지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디스플레이특구 계획을 승인하고 디스플레이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2. 디스플레이특구에 필요한 부지 및 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소요 재원의 조달 방안이 실현 가능할 것

4. 그 밖에 디스플레이특구 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디스플레이특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디스플레이특구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이 경우 디스플레이특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디스플레이특구가 산업단지에 지정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

2. 디스플레이특구가 산업단지 외 지역에 지정된 경우: 관할 시·도지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디스플레이특구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디스플레이특구의 변경 및 해제) ① 디스플레이특구의 지정을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디스플레이특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디스플레이특구계획 및 디스플레이특구 지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디스플레이특구의 지정 사유가 소멸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정 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디스플레이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스플레이특구의 변경 또는 해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디스플레이특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디스플레이특구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디스플레이특구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스플레이특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투자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운영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3. 디스플레이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의 디스플레이특구 내 설비투자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9. 그 밖에 디스플레이사업자의 창업 및 유치 촉진사업 등 디스플레이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스플레이특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용수공급시설(용수관로, 가압장, 정수장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2. 전기공급시설(송전선로, 변전소, 변환소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4.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5. 그 밖에 디스플레이특구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디스플레이특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스플레이특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스플레이특구에 산업집적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 또는 디스플레이특구 입주기업체나 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스플레이특구에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 디스플레이특구 입주기업체(「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을 말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및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대상사업, 사용료·대부료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디스플레이특구를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디스플레이특구 입주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

제정안 제12조와 제13조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디스플레이특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제정안 제1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스플레이특구와 관련하여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입주기업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등 부담금과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게 함.

디스플레이산업이 소재 - 부품 - 장비 - 설계 - 응용 등 공급망과 기반기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산업으로서 관련산업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전후방산업이 집적하여 입지할 수 있는 특화 산업단지로서 디스플레이특구를 조성하고 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디스플레이특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국가첨단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되는 전략산업 특화단지¹⁸⁾와의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1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략산업등 관련 투자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기획예산처는 전략산업 특화단지와 별도로 디스플레이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특구제도를 통합조정하는 정부 정책방향¹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논의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부담금 및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은 다른 부담금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개별 법령으로 교통유발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부담금을 감면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고,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고 있거나 이전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특화단지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19)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2025.2.

6.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특례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 정 안
제15조(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디스플레이특구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협의·승인·인가·허가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이 지연되어 디스플레이특구의 조성·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인·허가등이 의제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인가·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4. 그 밖에 디스플레이특구의 조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인·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 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인·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인·허가권자가 인·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 이내에는 처리 계획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 계획을 제출한 인·허가권자는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허가 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허가 등의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인·허가권자가 제3항의 처리 기간 내에 인·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처리 기간 내에 인·허가 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인·허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조세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 디스플레이특구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 공급망 및 기술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디스플레이기술 관련 연구개발사업
 2.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스플레이특구 지원사업
 3. 그 밖에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②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 공급망 및 기술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디스플레이산업 관련 규제개선 신청 등) ① 디스플레이특구 관리주체와 디스플레이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디스플레이산업에 관련된 규제의 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결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내용,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디스플레이산업 분야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 등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15조는 디스플레이특구 사업시행자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사업시행과 관련한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디스플레이산업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허가권자에게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게 함.

디스플레이특구를 조성함에 있어서 에너지·상하수도·도로와 환경 등 다부처 소관사항에 대한 인·허가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디스플레이특구 사업시행자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산업통상부는 종합적 입지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특화단지 사업시행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를 신청할 수 있는 점²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제정안 제16조는 디스플레이산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세제 지원을 할 수 있게 함.

2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협의·승인·인가·허가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지연되어 특화단지의 조성·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에서 디스플레이산업 등 국가첨단산업과 관련하여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²¹⁾ 전세계적으로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응적 관점에서 디스플레이사업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실시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디스플레이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가능하므로²²⁾ 별도로 세제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고,

재정경제부는 개별법에 세제 지원에 대해 규정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²³⁾ 규정과의 관계상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제정안 제17조는 기획예산처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스플레이기술 관련 연구개발사업 등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선정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함.

21) China Daily, 「Tax breaks give tech edge to nation」, 2025.2.

2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4조(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과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23)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생략)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우 기술혁신 주기가 빠르고²⁴⁾ 기술격차가 시장점유율 변화로 직결되는 특성이 있는 점²⁵⁾을 고려할 때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산업통상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특례규정²⁶⁾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기획예산처는 개별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특례를 추가하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취지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24) Shenghao Zhang, 「Research Progress of Micro-LED Display Technology」, 2023.6.

25) National Science Review, 「Who will win the future of display technologies?」, 2018.5.

2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3.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③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제정안 제18조는 디스플레이특구 관리주체 또는 디스플레이 사업자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규제개선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내용을 처리하게 함.

디스플레이특구 관리와 디스플레이사업 운영에 있어 에너지·상하수도·도로와 환경 등 다부처 규제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디스플레이특구 관리주체와 디스플레이사업자에게 산업 관련 규제개선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산업통상부는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기업 등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점²⁷⁾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이

2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은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 장에서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기업에게 자료 보관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관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를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7. 디스플레이산업 전문인력 양성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 정 안

제19조(디스플레이산업 전문인력 양성) 정부는 디스플레이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스플레이특구 내 디스플레이기술 관련 대학의 설립 및 디스플레이특구로 디스플레이기술 관련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이전. 이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학교의 신설 및 증설 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산업체 수요와 연계된 계약학과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3. 제2호에 따른 교육기관 외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4.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및 전문교원 확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양성사업

제20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① 정부는 디스플레이산업과 관련 기업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계약학과등의 설치에 대한 수요를 매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계약학과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또는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디스플레이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디스플레이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디스플레이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6.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특성화대학등은 「고등교육법」 제32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등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성화대학등의 입학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 ④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특성화대학등은 시설·교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특성화대학등의 입학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기준·절차,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제3항에 따른 입학 증원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19조는 정부가 디스플레이특구 내에 디스플레이기술 관련 대학을 설립하거나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이전시키는 등 인력양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함.

제정안 제19조제1호 단서는 디스플레이기술 관련 대학의 설립과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학교의 신설 및 증설 제한²⁸⁾은 적용하지 않도록 함.

2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

디스플레이산업에 있어 R&D를 담당하는 연구개발인력과 생산과 검품을 담당하는 전문생산인력의 양성필요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국토교통부는 대학의 설립·이전과 관련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학교의 신설 및 증설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수도권집중을 방지하고자 하는 동 법률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는 의견이므로 논의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제정안 제20조는 정부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계약학과²⁹⁾의 설치와

서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공업지역의 지정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2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나 유사한 학과·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제정안 제21조는 정부가 디스플레이산업과 관련하여 특성화대학과 특성화대학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함)를 지정할 수 있게 하면서,

동조제3항에서 특성화대학등의 지정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특성화대학등을 지정하는 경우 「고등교육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성화대학등의 입학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함.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종사인원이 2024년의 경우 전년 대비 27% 증가하는 등³⁰⁾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계약학과의 설치와 특성화 대학·대학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을 통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생 선발기준의 공동 마련, 교육과정·교재의 공동개발 및 산업체등 인사의 교육 참여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30)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디스플레이 산업, 무기발광으로 영역 확장하며 산업인력 27% 증가」, 2025.7.

다만 교육부는 수도권 지역 대학의 입학정원은 「고등교육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여건과 수도권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것³¹⁾으로, 개별법에서 수도권 지역 대학의 입학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므로 논의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31) 고등교육법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생의 정원) ①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 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 라.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4. 국립학교의 정원
5. 공립학교의 정원

8. 보칙 및 벌칙 (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 정 안

제22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디스플레이특구 관리기관, 디스플레이사업자, 그 밖에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디스플레이특구 관리기관, 디스플레이사업자, 그 밖에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기관·단체의 사무소, 사업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전담기관의 임직원
3.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제22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등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정안 제22조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디스플레이특구 관리기관 등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업무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제정안 제23조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제정안에 따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법인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게 함.

제정안에 따라 디스플레이특구 관리기관 등 관련 기관과 단체에 부여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상당수 입법례에서 장관의 자료제출요구권과 업무위임·위탁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³²⁾을 고려할 때 제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3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5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화단지 관리기관 및 전략산업등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관리기관 및 전략산업등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사무소, 사업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정안 제24조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공무원 신분을 요건으로 하는 벌칙 규정³³⁾을 전담기관의 임직원 등 공무원 신분을 갖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경우 해당 사람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이고,

제정안 제25조는 제정안에 따른 업무보고·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와 출입·검사 요구를 거부·기피한 자 등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것임.

디스플레이산업혁신위원회의 비공무원 위원의 경우 디스플레이산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등 제정안 제24조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상의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33)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보고·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보칙 규정과 벌칙 규정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상당수 입법례에서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규정과 과태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³⁴⁾ 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60

3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47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

제51조(과태료) ①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출입·검사 등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